



MATERION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Carbon (bulk form)	
기타 식별 수단	G32	
나.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 같은 또는 산업 현장에서 준비에 물질의 용도	
사용상의 제한	소비자가 사용 개인 세대 (= 일반 = 소비자)	
다. 공급자정보	회사명 : Materion Advanced Materials Germany GmbH	
주소	Borsigstrasse 10 Alzenau 63755 독일	
이메일 담당자	Materion.Germany@materion.com Hermann Schmiing	
긴급전화번호	49.60.23.91.82.0	
수입자 회사명	See above.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	G32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		구분 2
물리적 위험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 3 호흡기계 자극
건강 유해성	분류되지 않음.		
환경 유해성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o 그림문자



o 신호어

없음. 경고

o 유해·위험 문구

H252	대량으로 존재 시 자기발열성: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H335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o 예방조치 문구

예방

P235 + P410	저온으로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피하십시오.
P261	(분진·흙·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십시오.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십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십시오.

대응

P304 + P340	흡입한 경우: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편하게 할 것.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저장

접촉 금지물질로부터 격리하여 보관할 것.

폐기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알려지지 않음.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 분진폭발 위험성):

보충정보 자세한 내용은 +1.216.383.4019에서 제품 관리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 번호	식별번호	함유량(%)
탄소		7440-44-0	KE-04671	100

4. 응급조치 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물로 헹굴 것. 자극이 발생하거나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비누와 물로 씻어 낼 것. 자극이 발생하거나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 다.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라. 먹었을 때 입을 씻어내시오.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일반적인 지원 방식을 제공하고 증상에 따라 치료하십시오. 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 증상은 지연되어서 나타날 수 있음.
- 가장 중요한 증상/영향, 급성 및 지연된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기침. 의도된 용도의 정상 상황에서, 본 물질은 건강에 위험을 가하지 않음.
- 일반적인 조치사항 불편함을 느끼면,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 (가능하면 라벨의 표시사항을 보여줄 것). 의사에게 사용된 물질에 대해 알리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적절한 소화제 물 안개. 포말. 분말소화약제. 이산화탄소(CO2). 부적절한 소화제 없음.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예: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이 제품은 불연성 물질임.
-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착용할 보호구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예방조치 개봉하지 않은 용기를 식히기 위해서 물 분무를 사용할 것.
- 일반 화재 위험성 대량으로 존재 시 자기발열성: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제품의 형태로 불때 관련이 없음.
- 특정 방법 표준 소방 절차를 준수하고 기타 관여된 물질의 위험성을 고려할 것.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필요없는 인원은 멀리 대피시킬 것. 누출 지역으로부터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사람들을 대피시킬 것. 소지하는 동안 적절한 보호 장비 및 보호복을 착용할 것. 적절하게 환기가 되도록 할 것.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하수도, 수로 또는 지하로 방출시키지 말 것.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제품은 물과 혼합되지 않고 수표면에서 확산됨. 위험없이 할 수 있는 경우 누출물을 막을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 가. 안전취급요령 분진 생성 및 축적을 최소화시킬 것. 저온으로 유지하십시오. 장기간 노출을 피할 것. 적절히 환기할 것. 적합한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올바른 산업 위생 절차를 준수할 것.
- 나. 안전한 저장 방법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십시오. 직선 햇빛을 피한 차고 건조한 곳에 저장함. 밀폐용기에 저장하며 기타 서로용해되지 않는 자료와 구분함. 단단히 밀폐된 용기에 보관. 다른 물질과 격리하여 보관하십시오. 적하물 사이에는 간격을 유지하십시오.

8. 노출방지/개인보호구

-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물질	종류	값	형태
Carbon (bulk form)	TWA	2 mg/m3	호흡성 분율.

라. 토양 이동성

제품은 물과 혼합되지 않고 수표면에서 확산됨. 해당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본 성분으로부터 부정적인 환경 영향 (예: 오존층 감소, 광화학적 오존 발생 가능성, 호르몬 붕괴, 지구 온난화 가능성) 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처리하기 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빈 용기에 제품잔여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용기를 비운 후에도 제품표지의 경고사항을 따를 것. 빈용기는 재활용 또는 폐기를 위해 허가된 폐기물 처리장에 수집되어야 함.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

사용자, 생산자, 폐기물 처리업체가 협의하여 폐기물 코드를 부여해야 함.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IATA

- A. UN number Not applicable.
- B. UN proper shipping name Not applicable.
- C. Transport hazard class(es)
 - Class Not applicable.
 - Subsidiary risk -
- D. Packing group Not applicable.
- E. Environmental hazards No.
- F. Special precautions for user Not applicable.

IMDG

- A. UN number Not applicable.
- B. UN proper shipping name Not applicable.
- C. Transport hazard class(es)
 - Class Not applicable.
 - Subsidiary risk -
- D. Packing group Not applicable.
- E. Environmental hazards
 - Marine pollutant No.
- EmS Not applicable.
- F. Special precautions for user Not applicable.

MARPOL 73/78 부록 II 및 IBC 코드에 따른 벌크 상태 운송

해당없음.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허가대상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관리대상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MINERAL DUST (CAS 7440-44-0)

분진

작업환경 측정대상물질

규제되지 않음.

노출기준설정물질

탄소 (CAS 7440-44-0)

나. 화학물질관리법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관한 규제

사고대비물질

규제되지 않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금지물질

규제되지 않음.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PEC) (환경부 고시 제2015-92)

등재되지 않음.

제한물질

규제되지 않음.

유독물질

규제되지 않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폐유기용제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

규제되지 않음.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유해물질

탄소 (CAS 7440-44-0)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살충제에 관한 사전통보승인절차 (PIC에 관한 규정, MoE 번호 2014-252, 2014년 12월 31일; 살충제에 관한 규정, RDA 번호 2014-26), 개정된 바에 따라

등재되지 않음.

특정대기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추가 정보

이 물질의 안전보건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임.

목록현황

국가 혹은 지역

한국

목록명

한국 기존화학물질 목록 (ECL)

목록 등재 (예/아니오)

예

"예"는 본 제품의 모든 성분들이 해당 국가(들)의 목록에 관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냄

"아니오"는 본 제품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성분이 해당 국가의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음을 나타냄.

16. 그 밖의 참고사항

참고문헌

ACGIH

EPA: 데이터베이스 확보

NLM: 유해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US. IARC 화학물질인자의 노출기준 모노그래프 대한민국.

사고대비물질 (대통령령 제19203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위험물 지정수량 (대통령령 제18406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1)

대한민국. 제조등의 금지유해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대한민국.

제조 또는 사용 허가대상 유해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 대한민국.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노동부고시 제1986-45 개정) 대한민국. 취급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 대한민국. 휘발성유기화합물 (환경부고시 제2001-36, 2001년

3월8일 개정) 대한민국. 취급제한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 대한민국.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TCCL), 기존화학물질목록 (KECI)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기존화학물질목록 1997년이전목록

대한민국. 유독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0조) 대한민국.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4조) 한국. 사고대비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203호, 별표 2 및 3, 2005년 12월 28일)

한국. OELs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노동부 고시 제1986-45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8호까지의 개정본, 2013년 8월 14일)

한국. 금지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K-REACH" 제27조;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4 및 5)

한국. 제한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K-REACH" 제27조;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2 및 3)

한국 기존화학물질 목록, 2015년 1월 27일, 환경부 고시 제2016-138호까지의 개정본, 2016년 7월

13일

한국. 유독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K-REACH" 제20조;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1)

한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환경부 고시 제2002-166호, 2002년 11월 8일)

이 문서는 기술적으로 신뢰성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출처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정보는 정확한 것으로
확신된다. 마테리온(Materion)은 여기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 명시적인 또는 암시적인 보증을 전혀 하지 않는다.
마테리온(Materion)은 이 정보와 그 제품이 사용될 수 있고 실제 사용조건이 자사의 통제를 벗어나는 모든 조건을 예상할 수 없다.
사용자는 특정한 용도에 이 제품을 사용할 때 가용한 모든 정보를 평가하고 모든 연방, 주, 지역 및 지방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